##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671

발의연월일: 2025. 3. 5.

발 의 자: 박성훈·김성원·이헌승

이인선 • 고동진 • 최은석

조배숙 • 한지아 • 박충권

김기웅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한 남극토착동식물 포획·채취 또는 남극특별보호구 역 출입·활동의 경우와 같은 남극활동과 관련한 위반행위를 형벌을 통하여 제재하고 있음.

그런데 남극의 지리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실제 남극 출입은 연구 목적 등으로 한정되어 위반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고, 형벌이아닌 행정제재만으로도 제반의무 준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남극출입 및 활동과 관련한 위반행위는 1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후 반복 위반 시 형벌로 처벌하도록하고, 사후통보 및 시정명령과 관련한 위반행위는 기존 형벌을 과태료로 전화하여 불필요하게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완

화하고자 함(안 제24조, 제25조 및 제27조).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2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고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같은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제2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제27조제1항제1호의4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고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같은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
- 6. 제27조제1항제1호의5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고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같은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4조 및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의2.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한 자
- 1의3.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긴급한 남극활동을 외교부장

관 및 남극활동감시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 1의4.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
- 1의5.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활동한 자
- 7의2.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의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4조, 제25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24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	<u>&lt;삭 제&gt;</u>
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3. 제2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고 해당 처
	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같은 호에 따른 위반행
	위를 한 자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25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u>
1.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	<u>&lt;삭 제&gt;</u>
하여 긴급한 남극활동을 외교	
부장관 및 남극활동감시원에	
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	<u>&lt;</u> 삭 제>
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	

-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 <삭 제> 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 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활동한 자
- 4.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 <삭 제> 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 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신 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서 신설>

- 5. 제27조제1항제1호의4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고 해당 처 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같은 호에 따른 위반행 위를 한 자
- 6. 제27조제1항제1호의5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고 해당 처 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같은 호에 따른 위반행 위를 한 자

제27조(과태료) ① -----

----. 다만, 제24조 및 제25 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1의2.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
	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한
	<u>자</u>
<u>&lt;신 설&gt;</u>	1의3.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
	반하여 긴급한 남극활동을 외
	교부장관 및 남극활동감시원
	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u>&lt;신 설&gt;</u>	1의4.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
	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u>행위를 한 자</u>
<u>&lt;신 설&gt;</u>	1의5.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
	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
	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활동한 자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7의2.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
	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
	터 60일 이내에 그에 따른 조
	치를 하지 아니한 자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